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80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서-87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7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4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지센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4-86-01952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607-9		
	대표자 우철식		

확인내용

명칭 전기이륜차 OBC 기반 이동형 전원공급 및 충전 서비스

주요내용 차량에 탑재된 내장형 OBC를 이용하여 공용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이륜차를 충전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8조의8 등

구역 대전광역시

기간 2년

규모 200대 이내

조건

o (사전 안전성 검증) IEK·KC 등 공인시험기관과 협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OBC·충전 어댑터의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고 성적서 확인 후 개시

* CP 제어 충전모듈(KC 61851-1), 전자파 적합성(KC EMC), 전기안전(IEC 60335) 등

o (실증 구역·규모 한정) 실증은 1개 광역지자체 단위로 한정하고, 실증 규모는 200대 이내, 충전구역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제한

o (충전구역 확보) 공공부문이 소유(관리)하는 충전시설 중 옥외에 3개소 이상 설치된 충전구역에 한정하고, 사전 협의된 구역은 해당 충전시설·주차구역에 실증특례 사용을 허용하는 시설임을 주차장 사용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현수막·스티커 등으로 반드시 표시, 이를 사전협의 구역으로 보고 후 개시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아파트 등 민간부문은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

o (관리·감독 협조) 실증 데이터와 함께 민원·이용자 간 분쟁 발생 현황, 안전사고 등 이벤트 발생 시 산업통상부·전담기관에 즉시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4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코스맥스엔비티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14-87-01803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 제씨동 601호(삼평동)		
	대표자 김남중		

확인내용

명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 및 제5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II.공통표시기준

구역 [생산] 신청기업(이천) 및 협력기업(음성·원주) 공장 / [판매] 고객사 유통망(온/오프라인)

기간 2년

규모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98개 품목

조건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에서, 일반식품(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
- **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
-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할 것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및 심의,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4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르노 마곡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49-85-03377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 1동 1층		
	대표자 홍기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 1동 1층 '오르노 마곡점'

기간 2년

규모 오르노 마곡점 1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 **성분등록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메뉴**가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실증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4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르노 성수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73-85-03272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9, 1층		
	대표자 홍기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9, 1층 '오르노 성수점'

기간 2년

규모 오르노 성수점 1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 **성분등록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메뉴**가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실증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4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르노 신용산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62-85-03519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23, 1층		
	대표자 홍기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23, 1층 '오르노 신용산점'

기간 2년

규모 오르노 신용산점 1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 **성분등록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메뉴**가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실증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로브로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55-86-0195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동2가)		
	대표자 노승준		

확인내용

명칭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주요내용 AI를 탑재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IGRIS-C)을 실제 산업현장에 배치, 작업 수행능력 및 현장 적응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7조 (별표2)

구역 네페스, 딜리버리랩, 성우하이텍, HD현대삼호 작업장

기간 2년

규모 로봇 20대 실증

조건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조치
② 필요시 고용부(안전보건공단)에서 모니터링 등 역할을 위해 참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5-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5-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미코파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8-87-01585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신소현동)		
	대표자 최성호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 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제39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대마산업단지 내 수전해 시스템 성능평가센터 부지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과 수소품질 성능 및 수소정제장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SOEC)의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5-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5-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건설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1629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자 이한우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 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제39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대마산업단지 내 수전해 시스템 성능평가센터 부지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과 수소품질 성능 및 수소정제장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SOEC)의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5-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5-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재)전남테크노파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6-82-14122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대표자 오익현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 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제39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대마산업단지 내 수전해 시스템 성능평가센터 부지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과 수소품질 성능 및 수소정제장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SOEC)의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6-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6-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동서발전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0-86-19199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북정동)		
	대표자 권명호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 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제39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23-2, 3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그린수소 R&D 클러스터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과 수소품질 성능 및 수소정제장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SOEC)의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6-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6-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9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미코파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8-87-01585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신소현동)		
	대표자 최성호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고체산화물 전해질 기반, 고온 수증기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고온 수전해(SOEC)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 제39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23-2, 3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그린수소 R&D 클러스터

기간 2년

규모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 1기

조건

○ SOEC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과 수소품질 성능 및 수소정제장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SOEC)의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마음에이아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4-86-5544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 (시흥동)		
	대표자 유태준		

확인내용

명칭: 실외 4족보행 순찰로봇

주요내용: 자율주행 4족보행 로봇을 일반 통행로에서 순찰에 활용하고, 필요시,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민 안전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구역: 천안천 산책로, 천안삼거리공원

기간: 2년

규모: 로봇 총 6대

조건

①운행 중 발생 가능한 상황 예상 시나리오 기반 로봇 안전 매뉴얼 제시
②천안시 및 컨소시엄과 협의 후 통합 관제 이상 상황 관리-운영-대응 시나리오 제시
③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심야, 새벽 시간(00시~06시)을 제외한 시간대 운행 시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동행
*단, 긴급 상황에서의 출동에 한하여 안전관리자 예외 적용(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개시 전 규제부처와 협의를 완료할 것)
④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준하는 책임보험에 가입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8-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8-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샌즈랩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81-68136
	주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25, 12층		
	대표자 김기홍		

확인내용

명칭 AI기반 의료기관 실시간 사이버 위협탐지 및 자동대응 실증

주요내용 의료기관 내·외부 연계망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사이버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AI 보안 플랫폼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6조, 제29조 등

구역 분당차병원(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기간 2년

규모 분당차병원이 지정한 내·외부 서비스 연계 구간(사전 승인된 네트워크 구간) 내에 설치·운영

조건

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적법성 확보

- (차병원·샌즈랩) 샌즈랩이 차병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고 그 이익이 차병원에 귀속되도록 하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수탁 계약 체결
- (차병원) 샌즈랩이 위탁 목적의 범위를 넘어 트래픽 또는 분석 결과를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수집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계약상 처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접근·복제·반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권한 설정 현황 및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등 법 제26조 제4항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
- (샌즈랩)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트래픽 또는 분석 결과를 자사 모델 개발·고도화 등 독자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AI모델의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차병원의 시스템 내에서 차병원의 정보보안 목적으로만 수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물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차병원의 동의 없이 재위탁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26조 제5항 이하의 수탁자 의무 준수

② 처리 범위의 최소화

- (차병원·샌즈랩) 악성코드 판별, 이상행위·외부해킹 시도·랜섬웨어 유포행위 탐지 등 보안 목적의 탐지·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로 트래픽·파일의 열람·분석 범위 한정(법 제3조)
- (차병원·샌즈랩) 열람 과정에서 인지된 개인정보의 내용 자체를 위 목적 및 계약 범위 외로 이용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분석 완료 후 개인정보 포함 파일 및 중간산출물을 지체 없이 파기

③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

- (차병원·샌즈랩) 분석 플랫폼 및 실증 장비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계정별 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고, 병원 내부 승인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통제

④ 주기적 이행점검

- (차병원·샌즈랩)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및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보완계획 마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8-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8-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9-82-0368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야탑동)		
	대표자 김춘복		

확인내용

명칭 AI기반 의료기관 실시간 사이버 위협탐지 및 자동대응 실증

주요내용 의료기관 내·외부 연계망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사이버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AI 보안 플랫폼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6조, 제29조 등

구역 분당차병원(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기간 2년

규모 분당차병원이 지정한 내·외부 서비스 연계 구간(사전 승인된 네트워크 구간) 내에 설치·운영

조건

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적법성 확보

- (차병원·샌즈랩) 샌즈랩이 차병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고 그 이익이 차병원에 귀속되도록 하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수탁 계약 체결
- (차병원) 샌즈랩이 위탁 목적의 범위를 넘어 트래픽 또는 분석 결과를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수집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계약상 처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접근·복제·반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권한 설정 현황 및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등 법 제26조 제4항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
- (샌즈랩)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트래픽 또는 분석 결과를 자사 모델 개발·고도화 등 독자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AI모델의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차병원의 시스템 내에서 차병원의 정보보안 목적으로만 수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물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차병원의 동의 없이 재위탁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26조 제5항 이하의 수탁자 의무 준수

② 처리 범위의 최소화

- (차병원·샌즈랩) 악성코드 판별, 이상행위·외부해킹 시도·랜섬웨어 유포행위 탐지 등 보안 목적의 탐지·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로 트래픽·파일의 열람·분석 범위 한정(법 제3조)
- (차병원·샌즈랩) 열람 과정에서 인지된 개인정보의 내용 자체를 위 목적 및 계약 범위 외로 이용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분석 완료 후 개인정보 포함 파일 및 중간산출물을 지체 없이 파기

③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

- (차병원·샌즈랩) 분석 플랫폼 및 실증 장비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계정별 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고, 병원 내부 승인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통제

④ 주기적 이행점검

- (차병원·샌즈랩)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및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보완계획 마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89-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로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37486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88		
	대표자 이용배		

확인내용

명칭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요내용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항만장비(야드트랙터, AGV) 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검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구역

○ (수소연료전지 제조) 충청북도 충주시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 (수소 충전·시운전)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센터
○ (수소 충전·실운전) 부산신항 3부두/7부두, 부산북항 5부두 자성대부두 철송장

기간 2년

규모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4대(항만 운송장비에 각 2대씩 장착)

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 · 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실증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되, 승인된 실증특례에 따라 달리 정한 사항은 제외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수소시설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다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KGS FU211 중 이동형 장비에 적용하기 곤란한 시설·기술·검사기준에 한하여 승인된 실증안전기준으로 보완**하도록 함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특례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전지 제조·검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수소용품은 KGS AH374 등 유사 이동형 연료전지 기준을 준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KGS FU211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업자는 실증장비 사용 전에 고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이행하고, 실증 장소의 추가·변경 시 **관할 행정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항만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89-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자동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8-85-17176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삼동)		
	대표자 최영일		

확인내용

명칭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요내용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항만장비(야드트랙터, AGV) 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검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구역

○ (수소연료전지 제조) 충청북도 충주시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 (수소 충전·시운전)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센터
○ (수소 충전·실운전) 부산신항 3부두/7부두, 부산북항 5부두 자성대부두 철송장

기간 2년

규모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4대(항만 운송장비에 각 2대씩 장착)

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 · 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실증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되, 승인된 실증특례에 따라 달리 정한 사항은 제외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수소시설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다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KGS FU211 중 이동형 장비에 적용하기 곤란한 시설·기술·검사기준에 한하여 승인된 실증안전기준으로 보완**하도록 함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특례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전지 제조·검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수소용품은 KGS AH374 등 유사 이동형 연료전지 기준을 준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KGS FU211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업자는 실증장비 사용 전에 고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이행하고, 실증 장소의 추가·변경 시 **관할 행정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항만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89-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유니투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6-87-02640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1로 168(차암동)		
	대표자 문홍기		

확인내용

명칭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요내용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항만장비(야드트랙터, AGV) 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검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구역

○ (수소연료전지 제조) 충청북도 충주시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 (수소 충전·시운전)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센터
○ (수소 충전·실운전) 부산신항 3부두/7부두, 부산북항 5부두 자성대부두 철송장

기간 2년

규모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4대(항만 운송장비에 각 2대씩 장착)

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 · 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실증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되, 승인된 실증특례에 따라 달리 정한 사항은 제외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수소시설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다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KGS FU211 중 이동형 장비에 적용하기 곤란한 시설·기술·검사기준에 한하여 승인된 실증안전기준으로 보완**하도록 함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특례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전지 제조·검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수소용품은 KGS AH374 등 유사 이동형 연료전지 기준을 준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KGS FU211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업자는 실증장비 사용 전에 고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이행하고, 실증 장소의 추가·변경 시 **관할 행정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항만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89-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마루이엔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09-86-30457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1로 15(압촌동)		
	대표자 권용기		

확인내용

명칭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요내용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항만장비(야드트랙터, AGV) 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검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구역

○ (수소연료전지 제조) 충청북도 충주시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 (수소 충전·시운전)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센터
○ (수소 충전·실운전) 부산신항 3부두/7부두, 부산북항 5부두 자성대부두 철송장

기간 2년

규모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4대(항만 운송장비에 각 2대씩 장착)

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 · 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실증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되, 승인된 실증특례에 따라 달리 정한 사항은 제외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수소시설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다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KGS FU211 중 이동형 장비에 적용하기 곤란한 시설·기술·검사기준에 한하여 승인된 실증안전기준으로 보완**하도록 함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특례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전지 제조·검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수소용품은 KGS AH374 등 유사 이동형 연료전지 기준을 준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KGS FU211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업자는 실증장비 사용 전에 고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이행하고, 실증 장소의 추가·변경 시 **관할 행정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항만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89-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성산브이씨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35-81-01130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의과학6로 12-11		
	대표자 김인호		

확인내용

명칭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요내용 항만 물류 운송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항만장비(야드트랙터, AGV) 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검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제48조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구역

○ (수소연료전지 제조) 충청북도 충주시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 (수소 충전·시운전)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센터
○ (수소 충전·실운전) 부산신항 3부두/7부두, 부산북항 5부두 자성대부두 철송장

기간 2년

규모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하이브리드 시스템 4대(항만 운송장비에 각 2대씩 장착)

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 · 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실증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되, 승인된 실증특례에 따라 달리 정한 사항은 제외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수소시설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다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KGS FU211 중 이동형 장비에 적용하기 곤란한 시설·기술·검사기준에 한하여 승인된 실증안전기준으로 보완**하도록 함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특례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전지 제조·검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수소용품은 KGS AH374 등 유사 이동형 연료전지 기준을 준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KGS FU211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업자는 실증장비 사용 전에 고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이행하고, 실증 장소의 추가·변경 시 **관할 행정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고법 및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항만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9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9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엘지전자(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7-86-1407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대표자 류재철		

확인내용

명칭 욕실 환기 시스템 온풍 기능 원격 제어

주요내용 Wi-Fi 사용 환경에서 욕실 환기시스템과 앱을 연동, 내장 센서 및 알고리즘을 통해 온풍 기능 등 원격제어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별표1
전기용품안전기준(KC60335-1, KC603335-2-30)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욕실 환기 시스템 20만대

조건

○ 욕실환기시스템(전기온풍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나, KC 안전기준(KC 60335-1, KC 60335-2-30)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원격 제어를 금지하고 있음

○ 다만, 원격 제어와 관련된 사항을 유럽(IEC) 및 미국(UL)에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용하는바 국제표준 동등 이상의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 원격제어 요구사항(IEC 60335-1 22.40, 22.49 ~ 51 및 Annex U)만족
- 또한, 기 승인된 전기레인지 실증특례와 동일한 규모와 조건을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국표원에 제출할 것
① 실증 규모는 욕실 환기 시스템 20만대로 한정
② 실증특례 제품 라벨 표시사항에 KC마크 사용불가 및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임을 반드시 명시할 것
③ 실증특례 제품 모델 제한(모델명을 규제특례확인서에 기재)
· M-X0120BASA, M-X0120BASB, M-X0120BASR, M-X0120BASV
* 제품 모델명은 개발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부처와 논의 진행 예정임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허가서-67호

임시허가서

제67호		허가연월일	2026년 9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퓨처게이트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40-88-02578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제8층 에이8-0053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대표자 최원훈, 장중호		

임시허가 내용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주요내용

비대면 신원확인(eKYC) 기술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과 AI·IoT 기반의 자동결제 및 재고관리 시스템을 모바일 앱과 연동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조건

<성인인증 기술 고도화 탑재>

○ 신청인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주류자동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은 국세청의 관련 **고시 정비 전까지 생체를 활용한 성인인증 기술을 탑재**할 것

<운영 방안>

○ **(설치장소)** 의제판매(소매)업면허를 받은 사업장 실내에 설치

○ **(CCTV 설치)** 영상자료 확보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판매기록부 제출)** 설치소재지, 주류 판매일·수량·상품명·가격 등을 기재한 월별 판매기록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고유번호 관리)** 기기별 고유관리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판매시간 제한)** 심야시간 등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동으로 판매 중지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세청에서 「주류의 반출·판매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시 운영시간이 제한될 예정이며,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업체는 주류자판기가 설치된 소매점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함

○ **(경고문 부착)** 경고문구 부착 또는 표출 의무

<경고문구(안)>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완료한 자만 주류 구입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에 대한 안내)** 주류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을 구입하였거나 구입예정인 의제판매(소매)업자에게 임시허가 조건 안내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